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봉인의 근거 마련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증원 등〉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74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금융감독원장의 ‘봉인’ 조치에 대한 근거 신설	3
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증원 등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6.
3.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

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0조).

Ⅲ. 검토의견

1. 금융감독원장의 ‘봉인’ 조치에 대한 근거 신설

-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 ----- ----- ----- ----- --있고,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²⁾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

1) 형체가 있는 동산에 대하여 그 모양을 바꾸지 못하도록 처분으로서 날인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검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봉인은 직접적 강제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행정기본법」³⁾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외에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⁴⁾과 「검사 및 제재 규정 시행세칙」⁵⁾에 근거하여 봉인 등의 조치를 해온 것은 「행정기본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⁶⁾.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당해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제20조(봉인) ① 검사반장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6) 감사원,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정기감사」, 2023.3.

[금융감독원의 봉인 실시 내역(2017~2021년)]

구분	대상기관	검사기간	봉인 목적물의 범위	봉인사유	봉인으로 확보한 자료
1	○○은행	2017.12.19.~12.22	업무용 PC 9대, 서류 캐비닛	관련파일 위조, 변경, 삭제 방지	PC 9대
2	○○은행	2017.12.19.~2018.1.24	2015~2017년 채용서류 및 전산자료 일체	채용비리 검사	확인 불가
3	○○은행	2018.3.13.~4.2	2013년 채용서류 및 전산자료 일체	채용비리 검사	노트북 24대 및 하드디스크 41개
4	○○은행	2018.4.12.~5.4.	업무용 PC	채용비리 검사	PC 2대
5	○○카드	2018.4.12.~5.4	업무용 PC	채용비리 검사	PC 4대
6	○○은행	2019.6.24.~7.10	업무용 PC 2대	증거자료 입수	외장하드 1개 (파일 235개, 용량 285GB)
7	○○자산운용	2020.6.19.~7.10	업무용 PC, 업무자료, 창고 등	증거자료 입수	문서철 56개, PC 7대

주: 금융감독원이 봉인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건수는 확인 불가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정기감사」, 2023.3.

○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봉인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에 봉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동의가 없는 한 금융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물품 등을 봉인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

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봉인’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임.

-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PC 봉인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진행 중인 거래 종결을 이유로 PC 봉인의 연기를 요청한 뒤 일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동한 사례⁷⁾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감독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봉인 조치 등을 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봉인 조치는 「행정기본법」 등에 따라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봉인 조치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⁸⁾로, 국민의

7) 이 사례에서 해당 은행은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억원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음.

8)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재산권을 침해하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봉인 조치의 권한을 정부가 아닌 금융감독원⁹⁾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¹⁰⁾.

- 정부가 아닌 민간 법인인 금융감독원에게 직접적으로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혹은 사후 승인을 통해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증원 등

-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 이내로 증원하고, 부원장보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10) 봉인 관련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창고·금고·문서 및 장부·물품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훈련, 예규나 고시 등에 자체 감사를 위한 조치로서 봉인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 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u><후단 신설></u> ② ~ ⑥ (생략)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 ----- ---10명----- . 이 경우 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 의위원에 보(補)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의 구성원은 ‘집행간부 등’과 ‘직원’으로 구분되며, ‘집행간부 등’은 이 법에 따라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 감사 1명 등 총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¹¹⁾ 따라 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정관」¹²⁾에서는 회계전문가로 ‘전문심의위원’ 1명을 두도록 함.

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12) 2023년 11월 개정전 금융감독원 정관

제11조(전문심의위원) ①금융감독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전문가로 전문심의위원 1인을 둔다.

②전문심의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심의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외부감사 및 회계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지원·수행함에 있어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제7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14조의 규정은 전문심의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그런데 2023년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23년 11월 「조직관리규정」 등 개정 전 금융감독원 내규는 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 등’¹³⁾으로 분류하고, 임명절차, 임기·보수 및 처우, 업무상 권한¹⁴⁾에 있어서 집행간부인 부원장보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전문심의위원·국장 처우 등 비교 >

구 분	직급	임명절차	임기	연봉구성	기본급
부원장보	임원	원장 임명	3년, 연임가능	기본급+성과급	158,116천원
전문심의위원	임원	원장 임명	3년, 연임가능	기본급+성과급	158,116천원
국장	직원(1급)	원장 임명	-	기본급+직무급+평가급	전년도기본급+기본급 차등액

주: 2023년 11월 이전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정관 및 내규를 토대로 작성

○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1998년부터 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급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까지는 부원장보를 정원보다 1명 적은 8명만 임명하여 법상 집행간부 등의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음.

13) 2023년 11월 개정 전 조직관리규정 제2조

4. “집행간부 등”이라 함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을 포함한다), 부원장보 및 전문심의위원을 말한다.

14) 전문심의위원이 회계감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을 지휘하며 관련 전결권, 인사권, 예산권 등 행사(2024년 8월 현재는 회계감독국·회계감리1국·회계감리2국·감사인감리실 지휘)

<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등 직위 수 변화 (2013년~2022년) >

(단위: 명)

구 분	2013년~2015년	2016년~2019년	2020년~2022년
원장	1	1	1
감사	1	1	1
부원장	3	4	4
부원장보	8	8	9
전문심의위원	1	1	1
합 계	14	15	16

주: 각 연도 말 기준, 금융감독원 내규상 '집행간부 등'의 직위 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정기감사-2023.3.

○ 그러나, 2020년 2월 18일 직제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으로 부원장보 1개 직위가 신설¹⁵⁾됨에 따라 부원장보가 9인명이 되었음.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 등으로 규정·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법」상 집행간부 등 정원(15인)을 초과(16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 등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정관」, 「조직관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 등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직위 중 회계부문을 통할하는 전문심의위원 직을 신설하였으며, 권한, 보수, 처우 수준도 하향 조정하였음.¹⁶⁾

15)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전담 2인 부원장보 체제로 확대·재편(부원장보 1명 → 2명)

< 전문심의위원 지위 변화 >



자료: 금융감독원

□ 이에 개정안은 금융·자본시장의 기초 인프라인 회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회계감독 집행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감독원 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괄하는 회계전문가인 ‘전문심의위원’의 직위가 사실상 부원장보급 집행간부에서 선임국장급 직위를 가진 직원으로 하락하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부원장보를 회계전문가인 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집행간부의 수를 늘릴 것인지 여부는 전문심의위원의 회계전문 부원장보 격상 필요성과 함께 임원 정원 증가로 인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¹⁷⁾.

16) 【참고자료 1】 금융감독원 조직도 비교(전문심의위원 신분 조정 전후)

【참고자료 2】 정관 및 관련 내규 주요 개정내용

17) 금융감독원 설립(1999.1.2.) 이후 집행간부의 수는 법적 한도 내에서 증원이 이루어져 법정 집행간부 수를 확대한 바 없음.

○ 전문심의위원회는 각 법률에 따라 감리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이상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윤리위원회(이상 ‘공인회계사법’)의 당연직 위원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법률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하고 있는 사례¹⁸⁾에 비추어 볼 때 금융 관계 법률에서 전문심의위원회를 부원장보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계감독기구의 독자성을 보장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감독기구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괄적인 회계전문가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임원 정원을 확대하여 전문심의위원회를 회계전문 부원장보로 격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임원 정원의 증가가 금융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 전문심의위원회의 회계전문 부원장보 격상이 필요한 경우 임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임원 정원 내에서 업무 분장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같이 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회에 보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법체계 등을

18) 자본시장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금융위원회법」은 금융감독원의 설립 및 정관, 집행간부 등의 정원, 임면 및 직무, 업무, 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정관」은 부원장보의 임명과 업무 분장을 금융감독원 원장의 권한¹⁹⁾으로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9) 금융감독원 정관

제8조(집행간부의 직무)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 담당 부원장, 먼저 임명된 부원장의 순서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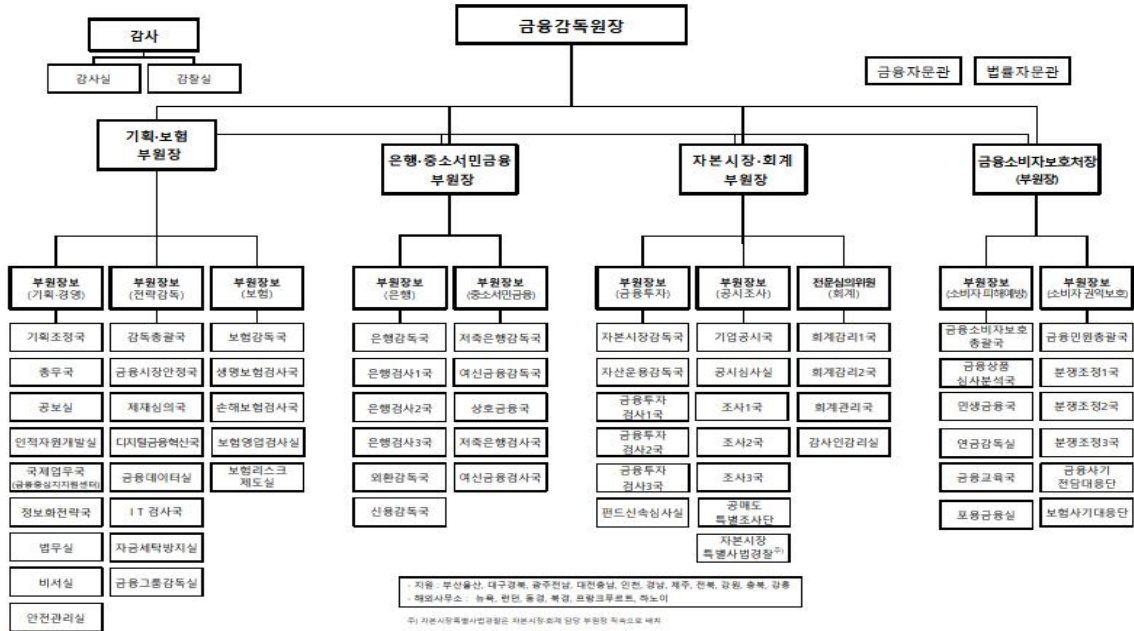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며, 각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조직관리규정

제33조(집행간부의 직무분장) ① 부원장, 부원장보의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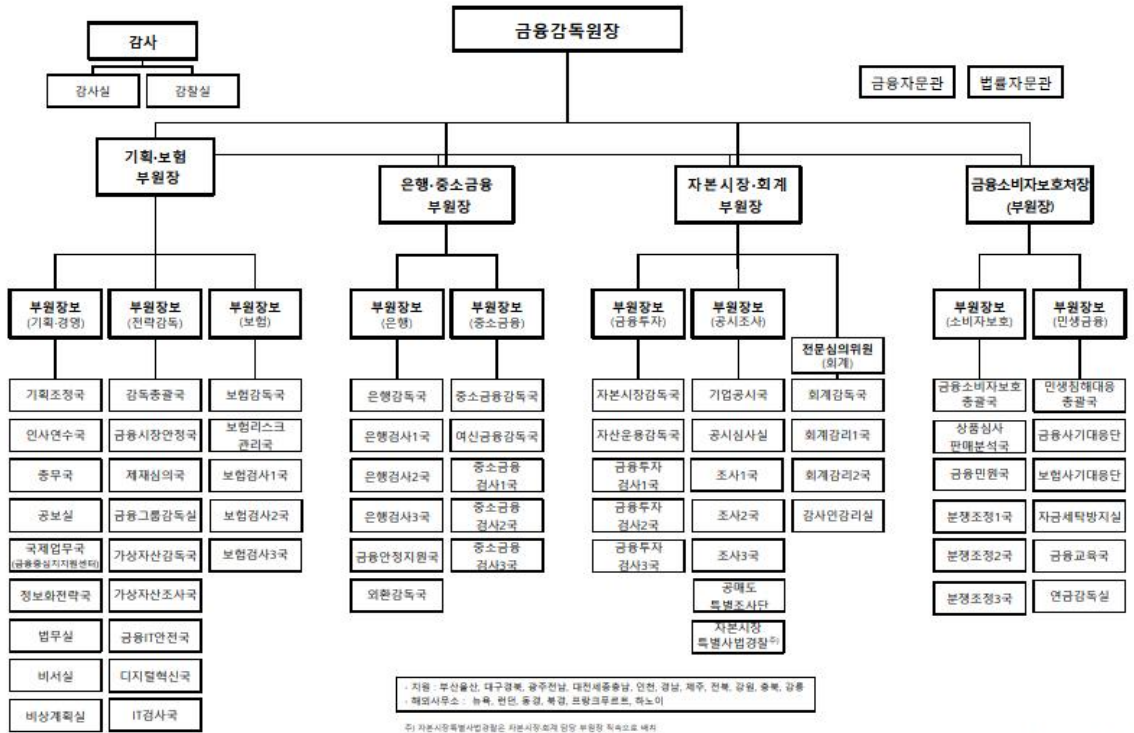
【참고자료 1】 금융감독원 조직도 비교(전문심의위원회 신분 조정 전후)

1. 과거('23.10월 기준)



※ 조직관리규정 개정('23.11.3. 시행) 반영

2. 현행('23.11월 기준)



※ 조직관리규정 개정('23.11.3. 시행) 반영

【참고자료 2】 정관 및 관련 내규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금융감독원 정관	제11조(전문심의위원) ①금융감독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전문가로 전문심의위원 1인을 둔다. ②전문심의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심의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외부감사 및 회계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지원·수행함에 있어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제7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14조의 규정은 전문심의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u>삭제</u> <2023.11.15.>
조직관리 규정	제2조(정의) 4. “<u>집행간부 등</u>”이라 함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을 포함한다), 부원장보 및 <u>전문심의위원</u>을 말한다. 제19조(직위단계) 직원의 직위단계는 상위직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개정 2018.1.25.> 1. 부서장 중 선임국장 2. 부서장(국장), 지원장(광역시), 해외사무소장(국장) 3. 부서장(실장), 지원장(광역시)	제2조(정의) 4. “집행간부”라 함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을 포함한다), 부원장보를 말한다. <개정 2023.11.22.> 제19조(직위단계) <u>직원</u>의 직위단계는 상위직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개정 2023.11.22.> 1. <u>전문심의위원</u> 2. 부서장 중 선임국장 3. 부서장(국장), 지원장(광역시), 해외사무소장(국장) 4. 부서장(실장), 지원장(광역시)

	개정 전	개정 후
	제외), 해외사무소장(실장) 4. 부서·지원에 속하는 팀장(S), 팀장(J)	제외), 해외사무소장(실장) 5. 부서·지원에 속하는 팀장(S), 팀장(J)

문 의 처

02)6788-5104